

(우) (리) (나) (라) (의) (관) (帽)

柳 喜 卿
Hee Kyung Yoo

<目 次>

序 論	第2節 高麗圖經에 나타난 高麗의 冠帽
第1章 上古時代의 冠帽	第3節 高麗의 笠制
第1節 幘	第3章 李朝時代의 冠帽
第2節 折 風	第1節 冠帽 制度
第3節 金 冠	第2節 李朝의 笠制
第4節 外來制度의 流入	第3節 網巾과 耳掩
第2章 高麗時代의 冠帽	第4節 婦女의 冠帽
第1節 高麗冠帽의 變遷	圖 說

序 論

사람이 冠帽을 쓰기 시작한 動機를 살펴 보건대 그것은 自然環境에서 머리를 保護하기 爲하여 着用한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形容은 至極히 簡素한 것이었으나 그後 人智의 發達과 더불어 社會生活이 차츰 複雜해 가자 一種의 社會的 產物로서 그것은 차츰 儀禮化하여 갔고 또한 多樣性을 띄면서 變遷發達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冠帽의 變遷過程을 더듬어 본다고 하면 古代 三國以前에는 北方民族으로서의 狩獵時代를 겪는 가운데 우리나라 固有의 冠帽의 發達을 볼 수 있으니 그 制度는 詳細치 않으나 古記錄에 依하면 幘이니 折風이니 하는 獨特한 形態의 冠帽을 着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後 外部民族과의 接觸 및 文化의 交流로 말미암아 그 나라 民族의 文

物의 影響을 적지 아니 받았으니 그 特出한 一例로는 新羅時代 眞德女王 當時 金春秋將軍이 唐나라에 가 그 衣冠制度에 贊기를 請하고 마침내 冠服을 가지고 도라와 이를 服用하고 國民에게 가지도 이를 着用케 하는 同時에 冠服制度를 唐儀에 贊아 定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例는 우리나라가 中國大陸에 隣接하여 있는 關係로 종종 있었으니 高麗에 들어서서 百官의 公服을 制定함에 唐後 宋나라의 影響을 받았고 中葉에 元나라에 附屬되자 上下가 蒙古式의 衣冠制度를 贊게 되어 開剃辮髮에 胡服을 着用하기를 近百年이나 하다가 元後 明나라가 中國을 統一하게 되자 明나라 衣冠制度를 贊기를 自請하여 明帝로부터 보내온 紗帽團領을 받아드려 이에 贊아 衣冠制度를 定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風潮는 李朝時代에 들어서서 그 事大主義와 더불어 더욱 尤甚한바 있어 儒

學을 國學으로 하고 明나라를 崇拜한 나머지 全的으로 우리나라 制度를 胡制라 하여 그 衣冠制度마저 쫓기에 汲汲하였으나 그러면서도 一方 우리나라 土風은 한쪽에 그대로 維持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수있는 여러가지 特色있는 冠帽의 形色을 보게된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날 까지 이르는 冠帽를 더듬어 보기로 하는 가운데 散在되어 있는 各文獻에서 이를 細密히 抽出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애 新羅以前을 上古로 보아 그 變遷을 그려왔고 高麗를 中古로 보았으며 李朝時代를 近世로 보아 3章으로 나누어 그 變遷을 살펴 보면서 그 時代에 特記할만한 冠制를 個別的으로 意見을 다라記述하여 보는 同時에 따로 各樣의 冠帽를 例示하여 여기에 簡單한 그 說明을 달아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本文에서 未備한 點은 圖說에서 補完키를 힘썼으나 研究 日淺하여 體系化되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沮漏한 것이 많음을 自認하면서 後日을 期하고자 하는 바이다.

第1章 上古時代의 冠帽

統一新羅 以前の 冠帽를 古記錄에 依하여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幘과 折風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 幘과 折風은 特히 高句麗 사람의 特有한 冠帽로 三國誌의 魏志 東夷傳 高麗條에 「大加主簿 頭着幘 如幘 而無後 其小加 着折風 形如弁」이라고 써있는 것을 비롯하여 後漢書의 東夷傳, 南齊書의 東南夷傳, 梁書의 諸夷傳, 魏書의 高句麗傳, 南史의 東夷傳, 北史의 東夷傳, 三國史紀 등에 거의 같은 記錄이 나타나 있다.

第1節 幘

元來 幘이라고 하는 것은 說文에 「髮有巾 曰幘」이라 하였고 方言에는 「覆髮謂之幘巾 或謂之承露 或謂之覆髮」, 急就篇註에는 「幘者 韜髮之巾 所以整續髮也」, 廣雅에는 「承露幘覆結也」라고 써워있는 것을 보면 頭巾의 一種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卽 頭髮 또는 首髻를 덮어 싸우기 爲한 簡單한 頭巾狀의 冠帽로서 巾에 類似한 模樣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急就篇에 「巾者 一幅之中 所以裹頭也」라 하였고 正韻에는 「巾蒙首衣也」, 玉篇에는 「佩巾本以拭物 後以着於頭」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首肯할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미루어 볼 때 幘이라는 것은 巾에서 出發한 것으로 後漢書 輿服志에 보면 이 事實을 說示하여 주고 있는바 卽 「秦雄諸 乃加其武將 首飾 爲絳帟 以表貴賤 其後稍稍作顏題 漢興續 其顏 却擽之 施中連題 却覆之 今喪幘 是其制也 名之曰幘」이라 하여 幘은 秦의 絳帟——頭巾類에서 發生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幘은 前文에 이어서 「幘也 頤也 頭首 嚴頤也 至孝文 乃高顏題 續之爲耳 崇其中 爲屋 今後施收 上下群臣貴賤 皆服之 文者 長耳 武者短耳 稱其冠也」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形態를 알 수 있으니 이 說明을 理解함에는 武梁洞 畫像石 등에 나타나 있는 人物圖像을 精密히 檢見하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依하면 幘은 「남바위」와 같은 것으로 顏題라는 것은 上蓋없는 幘의 上部에다 「북건」의 頭部와 같은 巾의 隆起部를 幘의 內緣으로 부터 附加한 것이고 收

라는 것은 幘의 後部에 붙은 형질을 指稱한 것 같다. 그러므로 幘은 曠으로 從前의 單調한 頭巾形의 것이 아니고 이에서 出發한 것이라 하여도 이때에 와서는 그 以前의 것과 相當히 形態를 달리하여 좀 더 修飾이 加해졌다고 할 것이며 또한 옛날에는 賤人이나 不冠者의 것이 었던 것이 貴顯階級에 까지 이것이 通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注意할 것은 前記 畫像石에 나타나 있는 諸幘中에는 다른 冠帽과 併用했던 것이 많다는 것인바 이것은 「남바위」 위에다 宕巾이나 笠子等を 併用했던 것과 恰似하며 또 諸書에 나타나 있는 바로는 高句麗에서는 大加主簿級의 專用物같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아마도 庶民階級에서는 通用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다.

第2節 折 風

折風에 對하여서는 「形如弁」이라고 하였을뿐 그 形容을 精密하게 傳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形態를 究明하는 方途로서 弁과 같다고 하였으니 弁字의 解釋부터 하여 보면 그 形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卽 弁字는 위에 「ㄷ」와 밑의 「卍」와의 두 部分으로 形成되어 있는 글字로 이 글자와 같이 「ㄷ」는 冠帽의 三角狀을 表現하는 것이고 밑의 「卍」는 冠帽의 끈(紐)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弁의 體部가 三角狀이었던 것만은 確實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弁에 대한 우리나라 말인 「갓갈—고갈」의 語源의 解釋도 「갓」卽 尖

角 다시 말하면 突出部라는 말과 「갓」卽 冠帽라는 말이 組合된 名詞로서 이것은 頂上의 冠帽라는 뜻이며 中國에 있어서의 弁의 形狀과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農民과 僧侶 사이에 傳하여지고 있으며 여기에 그 三角狀의 原型만은 完全히 保全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北史 東夷傳 高句麗를 들춰보면 「人皆着頭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曰其冠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이라고 있어 高句麗에서는 一般적으로 이 折風을 着用하였던 것을 알수 있는 同時에 士人은 여기에다 二個의 鳥羽를 裝飾하였고 貴者는 흔히 紫羅로서 製作하여 이를 「蘇骨」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魏書 高句麗傳에 「其官名有韓 謁奢 太奢 太兄 小兄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有差貴賤」이라고 하였고 周書 異域傳 高麗에는 「其冠曰蘇骨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有官品者 又顯異以插其上二鳥羽」라고 써워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의 모습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이 弁狀의 冠帽는 高句麗뿐만이 아니라 新羅에서도 通用된 上代朝鮮의 特殊冠帽로서 이는 金冠塚과 金鈴塚에서 出土된 樺冠을 보면 알수 있는바 兩者가 다같이 頂이 둥근 것과 角으로 된 두 種類가 있어 大體로 三角形의 것에서 漸漸變化하여 간 것이었던 것이다. 特히 古代 三韓의 하나인 弁韓에서는 「고갈」을 좋아 하여 우리 東俗에 「고갈」이라는 制度는 이때 생긴 것으로 記錄에 있는바 弁韓의 弁도 여기 由來한 것이라고 보며 그後 金首露王이 이

곳에 駕洛國(一名 金官國)을 세워 駕洛이니, 伽倻이니, 駕那니, 加羅니 한것도 다 「고갈」을 말하는 것으로 金으로 만든 것을 金官, 金冠, 金加那라 하여 金官國이라 함도 여기에 由來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附記하고자 하는바는 前記 諸書記錄에 依한 高句麗 冠帽의 特色인 「傍插二鳥羽」에 對한 것으로서 冠帽에다 二鳥羽를 修飾하여 그 貴賤을 가렸는바 이것을 通稱 鳥羽冠이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을 古記錄에서 차져보면 三國史記 車服屋舍의 色服中 高句麗에 北史에 記錄된 것을 引用하여 「高麗人皆頭着折風形如弁士人加插二鳥羽 貴者其冠蘇骨 多角紫羅爲之飾以金銀」이라 하였고 또한 新唐書에서 引用하여 「王服制以五采白羅 冠革帶皆金釵 大臣青羅冠 次絳羅耳 兩鳥羽 金銀雜釵 衫 箭褭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國」이라고 써워 있어 折風 皮冠 羅冠等의 冠帽에 大概 二個의 鳥羽를 가지고冠帽의 左右에다 插飾한 것이라고 想像되며 이것은 처음에는 自然鳥羽를 利用하였을 것이 겠지만 그後 金銀으로 만든 鳥羽狀 또는 鹿耳狀의 裝飾金具를 使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있는 것이다. 「金羽」 또는 「金銀爲鹿耳」라고 써워있는 句節이 金屬制 鳥羽冠帽를 指稱하는 것으로 써 이 金羽 또는 金銀鹿耳는 貴者專用이었던 것이라 하겠다.

大體로 冠帽에 鳥羽를 裝飾한다는 것은 狩獵時代의 遺俗인바 이는 獸身의 形相을 본뜬 句玉을 몸에 裝飾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이 鳥羽飾의 風俗은 高句麗 뿐만이 아니라 新羅나 百濟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北史 東夷傳 百濟에 「衣服略同高麗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翹」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如實한바 또한 이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三國時代 獨自의 것이 아니고 亞細亞北方의 諸民族間에 널리있었던 風俗으로 推測할수 있는 것이다.

第3節 金冠

上古時代의 우리나라 冠帽에 있어서 가장 燦爛하게 오늘날 까지 그 이름을 떨쳐 오고 있는 것은 新羅王公階級이 愛用하였던 俗稱 金冠인 것이다.

이 金冠에 對하여서는 考古學的으로 널리 研究되어 왔고 그 實物이 慶州의 金冠塚, 金鈴塚, 瑞鳳塚을 비롯하여 梁山 達城等地의 諸古墳에서 類型의 것이 繼續 發見되어 이미 詳細히 究明된바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그 概略을 적어보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爲先 그 構造부터 알기 위하여 그 代表的인 것으로 1921年 金冠塚에서 發見된 金冠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冠은 帶狀의 얇은 黃金板을 截裁하여 만든 것으로서 臺輪위에 5個의 立華形 裝飾이 붙어 있는데 前面의 3個는 對生狀으로 小枝가 뻗어 있고 後方의 2個는 波狀으로 屈曲하였으며 小枝는 互生狀으로 뻗어 있어 이들 小枝의 先端은 모두 寶珠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立華와 臺輪의 全體에는 둥글고 조그마한 璽珞片 130個와 翡翠의 小曲玉 57個를 金裂의 철사로써 꿰매 달고 있다. 또 輪의 緣邊에는 錐頭로서 波狀紋을 새기고 立華의 周緣에도 點線을 놓고 있다. 이것이 寶冠의 外冠이라고 말할 部分의 大略이며 冠의 中央에

鳥翼飾을 부친 內冠의 部分은 더욱 異彩를 띠고 있는데 이 鳥翼飾의 基底는 鱗狀의 打刻과 二種의 格子狀 透彫가 있는 黃金 薄板七枚를 꺾어 접어 三角形 弁이라고 할만한 것을 만들고 그 頂上에 鳥翼狀 冠飾을 높이 꽂은 것이다. 이 鳥翼狀 冠은 三枚의 透彫 黃金 薄板을 釘付한 것으로 全部 優麗한 六朝風의 唐草를 透彫하고 또 全面에 200個나 되는 圓板形의 小金瓔珞을 꿰매 달고 있다.

이외에 發見된 金冠 또는 金銅冠(靑銅地에 鍍金 또는 貼金한 것)의 構造도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上述한 것에 簡素化로 보아 無妨할 것이다.

金冠에 있어서 內冠과 外冠과의 關係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어 分離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이는 처음에 深山 夫婦塚의 金冠出土에서 알게 되었고 達城古墳 金冠과 瑞鳳塚 金冠의 內冠과 外冠이 釘着되어 있음을 보고 明白하게 되었는데 그 內外의 冠形을 精密히 檢見하여 보면 外冠은 結首式 輪臺에서 發達되었고 內冠은 覆頭式 弁에서 發達되어 온 것으로 그 發達過程이 다르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것을 同時에 着用하는 것이 그 美觀과 權威를 더하는 것이므로 마침내 內外를 結合하여 한개의 冠帽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漢代의 「巾幘」이 本來는 巾과 幘이라는 別個의 것이 한데 複合하여 成立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 發達過程을 여기에서 推察하여 본다고 하면 金冠의 內冠은 弁狀의 三角冠狀으로 이는 이미 前述한바와 같이 上古의 三國前後 우리나라에서 通着하던 冠

帽의 形態로서 이 弁狀冠帽가 基本이 되어 여기에 翼狀修飾이 붙고 다시 裝飾意慾이 發達하매 立華形 外冠을 添加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卽 金冠에 있어서는 外冠보다는 內冠이 主體가 되어 있는 것이고 外冠은 冠帽라고 하는 것 보다는 內冠을 修飾하는 附屬物이라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또한 內冠의 鳥翼狀 裝飾은 狩獵時代의 遺俗이며 外冠의 立華狀 裝飾은 農耕時代의 遺俗으로 옛날 新羅사람들의 富와 文化와 趣味는 冠帽에 꽂는 鳥羽를 金銀化하고 목에 느리는 獸牙를 翠玉化하기에 이르렀고 狩獵時代의 古俗은 農耕時代로 들어 가면서 一段 美化되는 同時에 田園에 滿發하는 百花를 보고 그 修飾意慾에 刺戟을 주었을 것이니 外冠에 列立한 五柱의 立飾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의 三柱는 對生하고 後面의 二柱는 互生하고 있어 이는 葉序의 變化를 象徵하는 것이며 枝의 尖端의 寶珠形은 꽃봉오리를 象徵하여 그 變遷過程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時代의 百濟나 高句麗의 冠帽에서도 新羅의 金冠外冠과 類似한 것이 있었음을 古記錄이나 繪畫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周書 異域 百濟條에는 「六品以上 冠飾銀華」라 하였고 舊唐書 東夷傳 百濟條에는 「其王服大袖紫袍……烏羅冠金花爲飾……官人緋爲衣 銀花冠飾」 唐書 東夷列傳 百濟條에는 「王服大袞紫袍……烏羅冠飾以金葩 群臣絳衣 飾以銀絳」이라 한 것으로 보아 百濟에서도 王과 官人の 冠帽에 金冠外冠에서와 같이 金銀의 華=花=葩를 裝飾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北史 列傳 高句麗條에도 「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이라 하였고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는 「其冠革帶 咸以金飾官之貴者 則青羅爲冠 次以絳羅 插二烏羽及金銀爲飾」, 唐書 東夷列傳 高句麗條에는 「大臣青羅冠次絳羅珥兩烏羽 金銀雜釵」라 있는 것을 보아 꽃이라고는 있지 않으나 高句麗에서도 金銀으로 冠帽을 꾸민 것만은 事實로서 이 文獻의 缺을 補充할 수 있는 것으로 大同郡 柴廷面 魯出里 鎧馬塚에서 發見된 壁畫를 본다 하면 人物圖의 諸部分이 明瞭하지는 못하나 塚主라고 생각되는 前方人物의 冠帽에 긴 花枝狀 立飾이 있고 그 立飾에는 綠調의 玉이 裝飾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金冠外冠의 그것보다는 훨씬 寫實的 樣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外冠의 臺輪에서 花枝狀 立飾이 서있는 模樣이 그 手法에 있어서 거의 同一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冠帽에 있어서의 立華飾은 이와 같이 三國의 共通된 것이라 할 것이며 後代高麗의 成宗이 契丹의 大兵을 물리친 姜邯贊將軍의 頭上에 八枝의 金花를 꽂아 주었다는 것도 이 前代의 遺俗이 아니었을가 한다. 또한 이 金華飾冠帽은 頭髮에 花葉을 꽂는데서 發達된 것이니 만큼 西洋에서도 이런 例는 發見할 수 있어 東西에 다 있었던 것으로 推測이 然하다.

第四節 外來制度的 流入

우리나라의 衣冠制度는 北方民族으로서의 그 固有한 것을 지니고 있었지만 外部民族과의 接觸은 그 나라 文化와의 交流를 가져왔고 여기에 적지않게 그 影響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三國史記를 보면 高

句麗 本紀에 文咨明王 元年 正月에 魏의 孝文帝가 王을 冊封하는 同時에 衣冠服物 車旗之飾을 賜하였다 하였고 安藏王 二年 正月에는 梁의 高祖가 王을 冊封하는 同時에 衣冠劍佩를 賜하였다는 史實로 보아서 高句麗에 魏와 梁의 衣冠制度가 輸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歷史上 가장 뚜렷한 것은 新羅에 있어서 唐의 衣冠制度를 들여다 이를 國民으로 하여금 着用케 한 史實인바 三國史記 車服屋舍의 色服中 新羅條에 이를 보면 「於新羅初 衣服制不明 二十三代法興王 始政六部人服色尊卑制猶是夷俗 至眞德王二年 金春秋入唐 請襲唐儀 文宗皇帝認可之 兼賜衣帶 遂還來施行 以夷易華 文武王四年 又革婦人服 此已後衣冠向中國」이라 하여 眞德王 二年에 金春秋將軍이 入唐하여 唐의 衣服制度를 請하여 그 衣冠을 드러다 國內에서 施行하고 이에 따라 新羅服制를 定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 史實은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도 「眞德女主三年己酉正月 始服中朝衣冠」이라 記錄되어 있어 이를 立證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三國遺事 紀異에는 「第二十九代 太宗王 此主代初服中國衣冠牙笏 乃法師慈藏 請唐帝來傳也」라고 있고 同義解에는 「慈藏定律 眞德王三年 始服中朝衣冠 國師獻議也」라 있어 거의 같은 年代에 慈藏大師가 傳해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如何든 이것 亦이 때 唐의 衣冠이 新羅에 드러왔다는 것을 傍證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新羅의 冠制를 여기에 記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大等은 幘頭로 材料의 任은 任意였

으며 眞骨女는 冠으로 瑟瑟鈿單은 禁했고 六頭品은 幘頭로 纁羅絁絹布를 使用하였고 六頭品女는 冠으로 纁羅紗絹을 使用하였으며 五頭品은 幘頭로 絁絹布를 使用하였고 五頭品女는 無冠이며 四頭品은 幘頭로 單只 絁絹布를 使用하였고 四頭品女는 無冠이며 平人은 幘頭로 單只 絹布를 使用하였다.

幘頭巾에 對하여서는 滋味있는 挿話가 있으니 그것은 三國遺事 第四代景文大王條에 살려있는 古事로서 景文王의 귀가 벼란간 당나귀 귀만큼이나 커졌는데 이 事實을 아는 사람은 幘頭匠이 뿐이고 王은 恒常 그 보기 흉한 귀를 幘頭로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王后나 宮女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다 한다. 幘頭匠은 王의 嚴命에 依하여 平生을 두고 王의 귀가 커진 것을 말하지않고 있다가 後에 죽게 되었을 무렵 道林寺 竹밭 사람없는 곳에 가서 竹밭을 向하여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같다」고 소리를 질러 말 못해은 답답한 속을 풀었다고 하며 그 後로는 그곳에 바람만 불면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같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新羅末期에는 唐制인 幘頭가 크게 流行하였고 서울에는 幘頭만드는 職業人까지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第二章 高麗時代의 冠帽

新羅의 뒤를 이어 나라를 세운 高麗는 모든 制度에 있어서 먼저 新羅의 옛에 쫓아 이를 使用하였거니와 이 時代는 中國에 있어서는 唐·宋·元·明이 興亡을 겪고 있는 時代인지라 自然히 이 影響을 받

어 文物의 制度도 그 變化를 보았고 따라서 冠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固有의 것에다 이들 나라의 影響을 입어 그 變遷을 보고 있는 것이다.

第一節 高麗冠帽의 變遷

高麗冠帽의 變遷에 對하여서는 먼저 高麗史 七十二 志卷 二十六의 輿服條를 보면 그 概略을 알수 있다.

지금 그 原文을 번거러히 여기에 收錄하는 것을 略하고 이를 中心으로 하여 그 줄거리를 풀어서 적어 보기로 한다.

東國은 三韓때 부터 儀章服飾에 있어서 土風을 循習하였다. 新羅 太宗王에 이르러 唐儀를 倣하기를 請한 後부터는 冠服의 制度가 漸漸 中華를 模擬하였다. 高麗太祖는 開國함에 있어서 일이 많고 草創인지라 新羅의 옛을 그대로 踏襲하였는데 光宗때에 이르러 비로소 百官의 公服을 定하고 尊卑上下의 等威가 分明히 되었다고 한다. 그後 顯宗이 難을 避하여 南行함에 이르러 文籍이 散逸하고 制度施爲에 있어서 其詳을 알수 없게 되자 毅宗朝에 平章事 崔允儀가 祖宗의 憲章을 裒集하고 唐制를 揀어 分辨하여 古今의 禮를 詳定하였는바 위로서는 王의 冕服 輿輅 卽儀衛鹵簿에 이르렀고 밑으로는 百官의 冠服 且載하지 않은 것이 없어 一代의 制가 갖추어 졌었다. 다시 元을 섬긴 以來 開剃辮胡服을 倣하기를 거의 百年이나 하였고 元後 明의 太祖 高皇帝는 恭愍王에게 冕服을 賜하는 同時에 王妃 群臣에게도 모두 賜한바 있어 이로부터 衣冠文物이 煥然히 새로彬彬하게 復古하였다는 것이다.

以上の 記錄에서 미루어 볼때 冠帽에 있

어서 高麗初에는 新羅의 衣冠制度를 그대로 踏襲함으로써 唐風을 模擬한 新羅의 冠帽를 그대로 使用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後 唐나라가 亡하자 中國을 統一한 宋制의 影響을 적지아니 받았다고 할 것이고 宋나라後 일어난 元나라에 屈服하게 되자 元나라의 風習을 쫓게 되었는바 元은 漢民族이 아닌 蒙古族이 中國을 統一하고 그 威勢를 멀리 西洋에 까지도 떨치던 나라였던 만큼 전혀 그 制度가 判異하여 所謂 蒙古風의 開剃辮髮에 胡服을 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忠烈王때의 일이었다. 그後 元나라가 亡되자 元나라가 다시 漢民族이 中國을 統一하고 明나라를 세우니 自然히 胡風을 버리게 되었고 다시 明나라의 風習을 쫓게 되었는바 高麗史 一三六 列傳 四九에 「辛禰 十三年 丁卯 五月 倂長壽 還京師 來帝賜所紗帽團領 國人始冠服制」라 하여 明帝가 紗帽團領을 보내오음으로서 이 制度는 高麗末뿐이 아니라 李朝時代에 들어가서 까지도 쫓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中間에 있어서 滿洲에서 일어났던 契丹이라던가 遼나 金에서도 우리나라 王에게 冠服을 보내온 일이 있으니 그들의 風習도 傳來 되었음을 알수 있는 바 그것은 高麗史 二世家 卷二에 「太祖 二十六年 癸卯 四月 我東方舊慕唐風文物禮樂 悉遵其制 契丹禽獸之國 慎勿效衣冠制度」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가는 바이나 어느程度였는지는 그 仔細한 것이 古記錄에 남아 있지 않아 알길이 없다.

第2節 高麗圖經에 나타난 高麗의 冠帽

여기에 所謂 元나라의 風習이 드러오기 전에 高麗의 風習을 가장 잘 그려 놓았다

고 하는 史記가 있으니 이는 宣和奉使高麗圖經으로서 宋의 徽宗 宣和五年 即 高麗 仁宗 六年에 正使 給事中路述迪, 副使 中書舍人傅墨卿이 宋에서 來朝時 그 一行 中에 提轄官이 되어 끼어온 徐兢이 在留 約一箇月間에 있어서의 見聞을 記錄한 것으로 그 그림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遺憾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萬若 이것이 傳해졌다고 하면 그 時代의 風習을 우리는 如實히 볼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高麗時代의 冠帽을 알아보기 爲하여 이 中에서 그 當時의 冠帽에 關한 것만 추려 보기로 한다.

王服에 있어서는 常服에는 烏紗高帽였으며 士民을 對할 때는 幘頭였고 祭祀를 지낼 때는 冕圭를 썼다고 한다. 官이 太史太府 中書令 尙書令일 때 着用하는 令官服에는 靑羅冠에다 絳羅로 珮를 하였고 羽毛로서 修飾하였는데 그後 紗制로 幘頭를 해 썼다고 한다.

進士로부터 入官省曹補吏 州縣令尉 主簿 司宰等이 着用하는 庶官服에는 幘頭를 썼다고 한다. 그리고 仗衛 即 軍人의 冠帽는 階級에 따라 形形色色인데 이를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龍虎左右親衛旗頭는 展脚幘頭를 着用하였는바 大略 中國의 服制와 類似하였으며 常服의 冠帽에는 金飾을 하지 않았다. 龍虎左右親衛軍將은 幘頭兩脚을 꺾어 右로 올려 微勢하게 屈하고 金花로서 裝飾하였는바 常服帽에는 亦是 金飾이 없었다. 神虎左右神衛軍은 金花大帽에다 紫帶를 하고 領下에 連繫하였는데 그 形勢는 몹시 높았으며 常服帽에는 亦是 金飾이 없었다.

與威左右神衛軍은 金花大帽이며 亦 常服帽에는 金飾이 없었다. 上六軍左右衛將軍은 介冑를 被用하고 烏革에다 間鐵로 文을 넣었으며 錦絡縫使하여 서로 連續하였다. 上六軍衛中檢郎將은 幘頭로 大禮 齋祭 受詔 拜表에만 介冑하여 나가고 兜鍪를 머리에 加하지 않고 背裏에 질머졌으며 그 紫文羅巾에는 珠玉으로써 修飾하였다. 龍虎中猛軍은 鎧甲을 加하였는데 다만 覆膊아 없었고 머리에 冑를 施用하지 않고 등에 졌으며 府會遊覽에는 甲冑를 하지 않았다. 金吾使衛軍은 幘頭로서 彩로써 上束하였다. 控鶴軍은 上折幘頭였다. 千牛左右仗衛軍은 머리에 皮冑를 加用하였다. 神旗軍은 「가죽으로서 蒙首하고 위를 木鼻狀으로 하여 獸額服猛을 表示하였다. 龍虎上超軍은 文羅頭巾. 官府門衛校尉 및 六軍散員旗頭는 展脚幘頭. 左右衛牽攏軍은 結縫烏紗軟帽. 領軍郎將騎兵은 珠具로써 裝飾한 文羅巾. 騎兵上騎將軍은 展脚幘頭를 着用하였다.

이밖에 民庶 卑隸에 이르기 까지 詳述되어 있는바 이들의 冠帽는 頭巾 아니면 幘頭였다.

頭巾은 新羅때서부터의 由來이며 幘頭는 舊例에 依하면 흔히 上流階級에서 使用하였고 다만 諸王宗室宮宅에서만 그 蒼頭(下人)에게도 使用을 許하였는바 이를 紫門假着이라고 일컫었는데 高麗史 七十二志卷二十六의 輿服에 보면「高宗 三十九年 王特許幘頭崔沆蒼頭 舊例唯幘頭諸王宗室宮宅蒼頭謂之紫門假着 始沆着幘頭權勢兩班家」奴라고 있어 高宗 三十九년에 王이 特히 崔沆의 蒼頭에게 幘頭를 着用함을 許容한데

서 부터 權勢있는 兩班의 家奴들 까지도 着用하게 되어 이때부터 下流階級에서도 이 幘頭가 流行하였다는 것이다.

第3節 高麗의 笠制

여기에서 「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笠」이 아니고 이와는 달리 現在도 使用하고 있는 馬尾竹織緯制의 것으로 이 笠制는 高麗 恭愍王때에 確立된 것이니 이를 다음에 說明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記錄에 보면 이 笠에 對하여 高麗史 七十二志卷 二十六 輿服에 「恭愍王六年 閏九月……自今文武百官黑衣青笠 僧服黑巾 大冠 女服黑羅 以順土風 從之」라고 있어 文武百官에게 青笠을 쓰도록 하였고 또한「恭愍王十六年 七月 敕曰 我國群臣冠服 既制定以所宜土風 有辨上下不可易也 近來輕改趨便 尊卑混淆云云」하여 品階에 따라 笠制를 定한바 있으며 同 九月에 「百官始着笠朝謁」이라 하여 비로소 百官이 笠을 着用케 된 史實이 나타나고 있는바 笠制는 이 時代 即 恭愍王때에 確立되었음을 立證하고 있다.

前者에도 말한바 여기에서 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笠과는 다른 것이니 옛날의 笠은 暑氣와 風雨를 가리기 爲한 要求에서 나온 것으로 따라서 社會的 意義를 갖는 冠帽라고 하기에는 不適當하다고 할 것인바, 勿論 說文解字에 보면 「笠無柄也」라고 있고 篇海에는 「笠笠以竹爲之 無柄白笠 有柄白笠」이라고 하여 笠은 柄이 없는 笠으로 笠과 笠을 柄의 有無로 區別하였은즉 그것은 柄이 없으니만큼 笠과 같이 雨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머리에 쓰게 되어 있어 冠帽의 一種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方笠式으로 되어 있어 冠帽로서는 亦是 未發達에 屬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方笠式의 笠에 對하여 記錄에 나타난 것으로 처음인 것은 三國遺事에 元聖大王의 記事인바 「伊殫金周元 初爲上角干 居二宰 夢脫幘頭 着素笠……覺而使人占之 曰脫幘頭者 失職之兆……王聞之甚患……杜門不出……阿殫曰 公所忌何事 王具說占夢之由……曰脫幘頭者 人無居士也 著素笠者 冕旒之兆……」라고 있어 이를 풀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角干으로 있을 時節의 元聖王은 夢中에 幘頭를 벗고 素笠을 썼는데 卜者가 이를 解夢하여 失職의 徵兆라고 하였기 때문에 몹시 근심하고 杜門不出하고 있던中 阿殫은 이와는 反對로 幘頭를 벗고 素笠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角干의 벼슬을 내놓고 冕旒를 쓴다. 卽 王이 될 徵兆라고 하여 王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素笠의 形態가 王이 쓰던 冕冠과 彷彿한 點이 있었다는 點보다는 그것이 無冠職者가 着用하던 『庶民用一般冠帽』라는데서 歷史的 遺物이라는 點에 想到하게 된다.

素笠은 分明히 그 옛날 狩獵時代의 遺物이라 할 것이며 그 始初는 實히 이時代 以前의 것으로 狩獵時代에는 되도록 簡素한 服裝이 必要했을 것이며 또한 夏季에는 禦暑禦雨의 冠帽 卽 蔽陽笠같은 것이 必要하였을 것인즉 따지고 보면 이는 幘이나 折風과 더불어 우리나라 最古의 冠帽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種類의 笠은 現在도 傳統을 잘 지키고 있는

農民이나 僧侶들의 「갈갓」 「삿갓」과 喪人이 쓰는 「方笠」으로 使用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方笠系統의 笠과는 달리 所謂羅濟笠이라고 稱하는 이 時代의 馬尾竹織緯制 笠은 前述한바와 같이 高麗 恭愍王時元나라 風習인 胡風을 버리고 다시 우리나라 制度로 돌아갈때에 土風에 依해서 갓기를 바랐고 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笠인바 文武百官에게 命하여 靑笠을 쓰게 하되 頂子에 그 사람의 品數를 나타내기爲하여 白玉 또는 小晶等を 달게 하여 그 品階를 가려 笠制를 定하였으니 이것이 곧 朝室에서 笠을 着用케 된 始初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李朝時代에 들어서며 널리 通用하게 되었는데 이에 對하여서는 李朝時代의 冠帽를 論할 時 다시 記述하여 보려고 한다.

第3章 李朝時代의 冠帽

高麗의 社稷을 이어 받은 李氏朝鮮은 高麗에서 盛旺하던 佛教 代身에 儒敎를 그 國敎로 삼는 同時에 모든 文物制度를 明나라에 倣했고 中國一邊倒였으므로 그 影響을 어느때 보다는 많이 받고 있으며 그 冠服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土風을 오히려 胡制라 하고 中國의 것을 華制라 하여 頻繁히 이를 服用할 것을 制定한바 있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固有의 것을 全部 變革할수는 없었으니 이는 史記에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一言하고 싶은 것은 李朝時代는 近世에 屬하므로 모든 記錄이 제법 具備되어 있어 參考할만한 資料가 많은바 여기에서는 이를 간추려서 그 大略만을 적

어 보려는 것이다.

第1節 冠帽制度

太祖 元年 十一月에 朝服冠帶의 制를 定한 것을 비롯하여 累次에 걸쳐 冠服制度의 制定이 있었는데 이제 李朝實錄을 中心으로 하여 李朝의 法典이라고 할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大典注解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全通 등에서 그 面目을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經國大典의 禮典 儀章條에 나타난 冠帽의 規定을 본다고 하면 一品은 朝服 祭服 모두 五梁木箴이고 公服엔 幘頭, 常服엔 紗帽를 着用하되 附屬品인 貫子 笠 纓은 金玉을 使用하고 笠飾엔 銀을 使用하였는바 大君은 特히 金을 使用하였고 耳掩은 段·紹皮로 만들어 썼으며, 二品은 朝服 祭服이 四梁木箴에다 다른것은 一品과 같았고, 三品은 朝服과 祭服이 三梁木箴이며 公服엔 亦 幘頭이고 常服엔 紗帽로서 그 附屬品은 一品과 같았으나 耳掩에 있어서만은 上官은 一品과 같이 段·紹皮로 하되 下官은 絹·鼠皮로 하였고 宗親은 絹·紹皮로 하였으며, 四品은 朝服 祭服이 二梁木箴에다 公服엔 幘頭, 常服엔 紗帽이고 耳掩은 絹·鼠皮로 하였으며 宗親은 三品과 같았고 五·六品은 四品과 같았으며 七·八·九品은 朝服과 祭服에 一梁木箴이고 다른 것은 五·六品과 같았다. 鄉吏는 朝服이나 祭服이 없으며 公服에는 幘頭를 使用하였고 常服에는 黑竹方笠을 着用하였다고 되어 있다.

以上の 規定外에 司憲府·司諫院·觀察使·節度使의 笠飾은 玉頂子를 使用하고 監察은 水精의 頂子를 使用하였다고 하며

閑散堂上官은 公會에 紗帽를 着用하고 別監의 常服에는 朱黃草笠을 썼으며 吏員·學生·小者等 特히 公定의 總括的 名稱이 없는 服制中 錄事는 有角平頂巾 諸學生徒와 書史는 無角平頂巾, 別監은 紫巾에 世子宮은 靑巾으로 되어 있으며 闕內差備는 靑帽 引路는 紫巾, 羅將은 皂巾, 皂隸도 皂巾을 쓰게 되어 있다.

다시 續錄에는 道士의 冠帽를 規定하여 紗帽로 하고 有職者는 雜職이라 하여도 多 五十竹의 草笠을 着用하도록 되어 있고, 續大典에는 官吏下僕의 冠服制로서 堂上 三品 以上은 烏紗帽에 紋紗角이고 戎服에는 紫笠에 貝纓을 하도록 하였으며 堂下 三品 以下는 烏紗帽에 單紗角이고 戎服에는 黑笠에 晶纓을 하게 하였고 錄事는 烏紗帽, 別監은 紫巾으로 郊外 動駕時는 黃草笠, 世子宮·嬪宮은 皂巾이며 守僕은 皂巾을 着用하도록 되어 있고, 大典會通에서는 遠近 幸行時는 모두 軍服을 着用하는데 近例로는 竹戰笠을 着用하였으나 毛戰笠을 着用하는 것이 定式이라 하였으며 戎服의 紫笠을 漆紗笠으로 改正하였다 하였고 또한 戎服의 黑笠晶纓의 晶纓은 高宗時에 와서는 廢止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서 李朝時代의 冠帽制의 그 大略을 적어 보았거니와 喪服에 있어서도 그 定한바가 있어 다음에 이의 冠帽를 살펴 보기로 한다.

李朝國初로부터 多少의 變遷은 있었으나 近代의 實際로서 이를 參考하면 斬衰三年에는 葬禮式때 麻로 만든 冠模樣의 것을 쓰고 外出時 喪笠이라고 그러는 크고 깊은 竹笠을 썼는데 그 끈을 두손으로 당기

게 마련이며 在室時에는 布로 된 頭巾과 같은 것을 썼고, 齊衰三年에는 斬衰三年과 같으나 外出時 다만 쓰는 것의 끈을 두 손으로 당기지 않았으며 期親에 있어서는 杖期나 不杖期나 外出時는 網巾뒤에 白布를 달고 검은 竹馬尾製의 冠物을 白布製의 것으로 하며 이는 齋衰五月도 같았고 齋衰三月이나 大功親이나 小功親에 있어서는 期親과 같되 但 網巾뒤에 白布를 달지 않았으며 在宅時에는 모다 布로 된 頭巾과 같은 것을 썼었다.

第2節 李朝의 笠制

笠制에 對하여서는 第二章 第三節 高麗의 笠制에서 이미 지난 時代의 變遷을 論한바 있거니와 李朝에 들어가서는 各種의 笠帽가 一般化함으로서 적지아니 變貌를 겪었으며 여러 文獻에 이에 對한 것이 收錄되어 있는中 여기에서는 그 要約만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過去의 笠이 禦暑禦雨를 爲한 自然發生的인 것이 었으며 方笠系統의 것임은 前述한 대로 인바 齊東野話에는 東方人이 잘 싸우는 故로 箕子가 東來하자 大笠長袖를 만들어 着用케 하여 百姓으로 하여금 몸을 不便케 함으로서 그 싸움을 끝이게 하였다고 하여 그 起源을 돌리고 있으며 靑莊館全書나 五洲衍文長箋散稿等에도 이를 引用한 記錄이 보이지만 이는 箕子의 治績을 誇示하려는데 不過하다 하겠으며 亦是 初期의 笠은 人間의 原始生活의 必要性에서 나온 自然發生的인 것이었고 그러하매 技巧가 없는 方笠系統의 것이었다고 함이 妥當할 것이다.

그後 이 方笠系統의 笠은 自然發生的인

것에서 차차 社會的產物로서 發達하여 가자 馬尾竹織緯制의 所謂 羅濟笠을 擧게 하였으니 이는 名稱 그대로 新羅나 百濟에서 着用되던 것으로 勝田遺事に 「新羅太宗以前 循土風戴羅濟笠 太宗以後用唐制 然而依奏于必與 本國水母木幹宜黑衣靑笠從之」라 있어 新羅 太宗以前에 이 羅濟笠을 썼으며 冠服에 있어서 中國의 것을 使用하게 되자 中斷되었다가 高麗朝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風水로 보아 靑笠을 씀이 좋다 하여 다시 着用케 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恭愍王때에 이 笠制가 確立되었다 함은 이미 밝힌바 있다.

그리하여 이 羅濟笠은 李朝時代에 들어서서도 當分間 使用되었는바 이제 芝峰類說 服用部 冠帽를 보면 「羅濟笠不知所始 但以名觀之疑出於新羅百濟時也 按高麗史 幸禱之年始令各司胥吏着白方笠 本朝爲外方吏人所著而龜之 壬辰變後久廢不復……」라고있어 外方吏人들이 如前히 이를 着用하였고 壬辰亂後에 廢止되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李朝에 들어서면서 더욱 笠制가 一般化함에 따라 이 羅濟笠外에 各種各樣의 笠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는 羅濟立과는 그 模樣을 달리하는 것들이었다.

이제 이를 살펴 보건데 이러한 笠의 種類에는 大略 草笠 紗笠 朱笠 猪毛笠 毛笠 등이 있었으니 草笠은 經國大典에 보면 別監의 常服에 朱黃草笠을 쓰게 하였고 또 한 續錄에 보면 有職者는 雜職이라 할지라도 모다 五十竹의 草笠을 着用케 하였는바 벼슬과 지체가 얇은 사람들이 쓴 것으로 또한 童子가 加冠하고 나서도 이를 着用하였으며 紗笠 朱笠은 文臣堂上의 戎服

에 이를 着用하였고 毛笠 鬘笠은 武臣에 公私間에 이를 着用하였었다.

위의 것 外에 平涼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林下筆記 文獻指掌篇에 보면 竹織으로 된 笠의 一種이라 하였으며 庶民層에서 着用하던 것이었으나 壬辰亂에 倭兵들이 兩班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 없었으므로 한때 大小人員이 모다 이 平涼子를 썼다고 하며 民庶는 그 體를 素로 하였으나 兩班은 이와 區別하기 爲하여 黑으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옛날의 遺制인 方笠은 李朝에서 土風으로 남아 靑莊飯全書에 보면 李朝中葉에는 胥吏들이 이를 썼다 하였고 俗稱「방갓」이라고 하여 喪人 또는 僧尼이 笠을 着用하여 近來에 이르렀으며 「사갓」(野笠)이라고 하여 農夫 田作時 이를 着用하여왔다.

그런데 自古로 人間의 日常生活에는 반드시 流行이라는 것이 뒤 따르는 法으로 笠制에 있어서도 그때 그때의 流行에 따라 그 모습이 變한바 있으니 이에 對하여서는 現存하는 여러 文獻中 特히 實學派의 巨頭인 李圭景先生의 五洲衍文長箋 散稿中 笠制辨證說에서 그 片貌를 찾아보고저 하는바, 이에

「高尙顔 效鬘雜記 笠制之高低 衣袖之濶狹 極則必反本 先定式 丙寅以前 笠則雲頭甚短 而涼臺太廣 衣制則其齊曳地 而袖廣五寸 當時以斯爲美 而丁卯之後 漸之變易 衣袖之廣幾於尺餘 笠頭長或至八寸 齊則距地尺 而涼臺則太狹矣 庚子以後 又嫌其笠太高 袖太廣 而日漸尙高尙低 已復乙丑以前之規 云見 此可知制度之變革 尤恒 而高氏之後 今爲數百年矣 衣冠變革不可枚舉

笠則近世專尙涼臺狹而雲頭長 袖短狹於前齊或僅過膝 帶取係絲而最尙鈴帶即帶綬互結如鈴也 鞋取雙鼻 其隨時變革不過十年之間 此古尤促矣」

라고 있어 이를다시 笠制에 關한 것만 簡單히 풀어 본다고 하면

「高尙顔의 效鬘雜記에 笠制의 高低가 極度에 達하면 반드시 도로 도라가 定式이 없는 法으로 丙寅以前의 笠은 雲頭가 매우 짧고 涼臺가 몹시 넓었으며 當時 이를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丁卯後는 漸漸 이것이 變易하여 雲頭는 길어져서 八寸이나 되고 涼臺는 몹시 좁아졌으며 庚子以後로는 또다시 그 笠이 매우 높아지고 이를 崇尙하여 乙丑以前의 規制로 도라갔다 한 것으로 보아 制度의 變革이 한결같지 못함을 미히 알수 있는바 지금 高氏以後 數百年이 된다. 衣冠의 變革 枚舉할수 없으니 笠은 近世에 와서 專혀 涼臺가 좁고 雲頭가 길어 그 隨時 變革함이 不過 十年間이며 옛날에 比하여 훨씬 단축되었다」라고 하여 그 當時笠制의 變改가 流行에 따라 얼마나 甚하였던가를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第3節 網巾과 耳掩

이 時代에 나타난 冠帽의 一種으로서 새로이 보이는 것은 特히 網巾과 耳掩인바 이에 對하여 그 概略을 또한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網巾에 對하여서는 芝峰類說 服用部 冠巾에 보면 「網巾古無其制 大明初道士所爲也 太祖命頒天下使人無貴賤皆裹之 遂爲定制……中朝外唯國人着網巾 他國則不然矣」라고 있어 옛날엔 그 制가 없던 것

이 명나라 初 卽 高麗末葉에 道士들이 하고있던 것을 李太祖가 사람의 貴賤을 가리지 않고 모두 쓰게 하여 定制가 되었고 이것은 中國과 우리나라만이 使用하였던 것임을 알수 있다.

여기에 李太祖가 天下에 網巾을 頒行하게 된 動機를 살펴 보건대 蜺菴瑣語에 보면은 어느날 李太祖가 微行으로 神樂觀에 이르러 道士가 繭絲로서 小網巾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 물으니 머리를 맺는데 쓴다 하였다. 網巾은 網口에 帛을 가지고 作邊하고 名하여 邊子(先緞)라고 하며 邊子 擘 後段에는 金玉 또는 銅錫으로 만든 두個의 小圈(貫子)이 있고 邊子の 兩머리에 各各 小繩(당줄)을 다라 二圈안으로 서로 끼고 網帶를 首邊에 頂束하여 눈섭과 가지런히하여 줄로 동인 것인데 이는 萬怯을 治齊하는 뜻도 되어 李太祖는 이를 듣고 기뻐하며 道士의 官에 命하여 數十頂을 맺어서 天下에 頒行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網巾은 처음에는 여기에서도 보 다시피 실로서 網을 만들었으나 靑莊飯書 蝨葉記 網巾에 보면 萬曆間에 이르러 民間에서는 실代身에 落髮이나 馬鬃으로서 만들었다고 하며 그 時節에는 馬尾를 使用하였는바 屍體에는 黑緞으로 網을 代身 하였으며 또한 喪人은 布로서 代身하였고 喪服中에는 網巾 兩端의 先緞을 黑으로 하지않고 白으로 하였다 한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中國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小圈(貫子)의 裝飾으로서 그 官品을 나타냈으니 이를 五洲衍文長箋 散稿中 網巾環制辨證說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卽 一品은 漫玉圈 俗稱 及玉環을, 二品은 金牽牛花樣·梅花樣·菘花樣의 及金圈이라고도 하는 雙螭圈을, 三品은 玉牽牛花樣·梅花樣·雜雕花樣의 俗稱 鍍八蓮環子를, 堂上三品以下 士庶에 이르기까지는 玳瑁·羊角·牛蹄의 小圈을 使用하였으며 庶人의 豪侈하는 者는 或은 琥珀·明珀等의 小圈을 使用하여 그 階級을 나타냈던 것이다.

또한가지 우리나라와 中國과 달랐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網巾은 오직 머리를 整齊하는데 使用하였고 網巾위에다는 다시 冠을 썼는데 中國에서는 網巾이 冠을 兼하여 그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耳掩에 對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亦是 芝峰類說 服用部 冠巾에서 그 說明을 찾아보면 「今之耳掩舊稱披肩 按征討錄 成廟朝命造披肩二千分賜士卒是也 中朝卽謂之暖耳 雖盛冬必旨下後百官始得戴之」라 하여 耳掩을 옛날에는 披肩이라고도 稱하였는바 成廟朝에 披肩 二千分을 만들어 士卒에게 下賜한 것이 그것이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 지라도 王命이 있는 後 비로소 百官이 이를 썼으며 中國에서는 이를 暖耳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그 沿革을 五洲衍文長箋稿中 煖耳 衲袴沿護頂煖帽辨證說에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煖耳 卽 耳掩의 制에는 公私貴賤文武의 着用하는바가 스스로 區別이 있었다. 私家에서는 恒常 着用하기를 貴賤文武를 論함이 없이 揮項·胡耳掩·風遮의 制가 있어 或은 毛로 或은 黑緞褐布

의 袂衣로 하였으며 武臣은 公服에 滿鞵頭里를 使用하였는데 이는 毛揮項의 前後와 外沿의 들레를 貂尾로서 鞵을 하였기 때문에 이름 지은 것이다. 朝士의 年老한 분은 闕內에서 나오면 小風遮를 쓰는데 이를 頂風遮라고도 하고 或은 三山巾이라고도 하였다. 文·蔭·武의·公服帽帶는 十月初吉로 부터 正月晦日에 이르기 까지 紗帽에 暖帽을 가리는데 堂上은 貂를 使用하였고 堂下는 鼠를 使用하였는바 俗名 耳掩이라 하여 그 모양은 밖같은 毛고 안은 紬로서 團圓이 매우 크고 뒤에 꼬리를 느려 매우 怪異하나 恒常 着用하여 風俗化하였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다. 成廟御製의 詩中에 獬皮耳掩이 있어 耳掩의 制가 李朝初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制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芝峰類說에는 지금의 耳掩을 成廟朝에 披肩二千을 만들어 士卒에게 分賜하였음을 가지고 그것이라 하였으며 宣祖에 이르러 百官 暖帽의 制가 매우 몇몇하지 못하자 丙寅年에 左相 權轍이 華制에 쫓기를 建議하여 施行되매 보는 者 매우 이를 아름답다고 하였고 이것이 곧 지금의 耳掩의 制이며 憲宗 甲辰年 겨울에 耳掩을 改正하라고 命하여 群僚 議論끝에 小風遮三山巾으로 定하여 中外에 頒布하였는바 外沿을 堂上은 貂로서 鞵하고 堂下는 黑皮로 鞵하였고 武臣은 前대로 滿鞵頭里를 着用하여 이로써 耳掩의 制가 改革되었으나 다시 舊制에 돌아갔다 한다. 國俗에 尊貴한 분 앞에서는 卑賤한者 敢히 揮項를 着用치 못했으므로 벗고 進見하였기 때문에 몹시 추위를 타는 者는 매우 괴로워 하였다. 十餘年前 부

터 抹額兒掩의 制가 있는데 獬皮로서 하고 밖같은 毛에 안은 紬로서 들레를 首經과 같이 하고 뒤에 雙小綬가 있어 黑緞으로서 이를 만들었고 또한 紐制를 取하여 笠을 벗지 않고서도 밖에서 着脫할 수 있어 도저히 便한 制度라 하여 上下가 通用했다.

여기에서 耳掩이 어떠한 것이며 쓰는 사람의 品位에 따라 무엇으로서 만들었으며 어떤때 着用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耳掩과 달리 額掩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이는 正言覺非에 보면 額掩은 貂·鼠의 帽로서 華音으로 읽어 耳와 같기 때문에 訛轉하여 마침내 耳掩으로 混同되고 있고 經國大典에도 「堂上官 貂皮耳掩 堂下官 鼠皮耳掩」이라 하여 混同하고 있으나 朝官이 着用하는바는 그 制 高大하여 耳掩이며 吏胥가 着用하는바는 그 制 環繞하여 알고 額掩인 것이며 額掩은 本來 이마를 덮기에 可하여 귀를 덮을 수는 없다 하였다.

第4節 婦女子의 冠帽

먼저 우리나라 婦女子의 冠帽에 對하여 上古時代로 부터 더듬어 본다고 하면 新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女子首巾幘」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언진 머리에다 巾幘을 쓴 것으로 이 風習은 지금도 우리나라 北部地方 婦女子에게서 그 모습의 一端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三國時代의 百濟는 後周書 異域傳에 「百濟婦人 衣似袍而袖微大 在室者 編髮盤於首後垂一道爲飾 出嫁者 乃分爲兩道」라 하였고 新羅는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新羅婦人 長襦 不粉黛 率美髮以縑首以珠

綵飾之」라 한 것으로 보아 그저 編髮하였거나 縷首하여 여기에다 珠玉으로서 修飾하기만 하였던 것 같다.

그것이 唐制가 新羅에 들어와서 부더는 上流階級の 婦女子들은 제대로의 冠을 쓰게되었는바 이는 三國史記 車服屋舍, 色服 新羅條에 眞骨女나 六頭品女는 冠을 썼는데 眞骨女の 冠은 材料의 錢을 任意로 할 수 있으나 瑟瑟鈿의 使用은 禁하였고 六頭品女の 冠은 纈羅紗絹을 使用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아마 冠다운 冠을 쓰게 된 始初라 할 것이다.

高麗에 들어서서도 新羅의 遺制를 좃고 唐·宋의 影響을 받아 上流階級の 婦女子는 亦是 冠을 썼는바 이에 對한 記錄으로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二十 婦女條에 「歲貢使趨闕 朝廷賜予十等冠服 遂以從之 今王府與國相家頗有華風」이라고 있어 宋에서 十等冠服을 주어 이에 좃고 그 冠帽制度가 公族貴家の 婦女子에게도 施行되었다 함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同文獻에 보면은 「白羅蒙首 製以三幅 幅長八尺 自頂垂下 惟露面目」이라 하여 貴婦人들이 外出時는 白羅로서 머리를 덮는데 그 制는 三幅에 幅의 길이 八尺이나 되어 아래로 내려 느렸고 간신히 얼굴을 내놓을 程度라 하였으니 이것 亦 冠帽의 一種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笠이라는 것을 썼던 모양으로 高麗史 志卷 刑法 禁令에 보면 「忠烈王十四年 四月 監察司榜…… 露衣簷笠兩班妻郊外服 今畜夫奴隸妻亦皆着之 尊卑別

無 自今皆禁斷……」이라고 있어 兩班의 婦女 外出時는 蒙首外에 簷笠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下流階級の 婦女子도 着用하여 尊卑를 가릴수 없게 되며 모두 禁하였다 하였으니 그 一般化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笠은 貴婦女 出他時 蒙首는 蒙首대로 하고 그 위에 썼는바 前記 高麗圖經 雜俗中에 보면 「婦女出入亦給僕馬 蓋亦公卿貴人妻也 從馭不過數三人 皂羅蒙首 余被馬上復加笠焉 王妃婦人惟以紅爲飾亦無車蓋也 昔唐武德貞觀中 宮人騎馬 多黑幕籬而全身蔽障 今觀麗俗蒙首之文」라 있어 이를 알 수 있는 同時에 高麗의 蒙首를 옛날 唐의 宮人 騎馬에 幕籬를 着用하여 全身을 덮은 것에 比喻하여 그 根源이 幕籬에 두었는바 이는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蓋頭 即 羅兀 亦 唐의 幕籬帷帽의 遺制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制가 비슷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李朝에 들어서서는 儒敎의 崇尚으로 말미암아 가장 禮를 尊重하게 되었고 婦女子의 內外는 그 極에 達하였는바 男女七歲不同席은 姑捨하고 집안에만 있을 것을 強要하여 理由없이 中門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설혹 뜰에 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敢히 一步도 뜰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徹底한 不文律의 禁足令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社會生活을 營爲함에 있어서 全히 집안에만 갓쳐 平生을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不得已 外出을 必要로 할 때도 있었을 것인즉 그럴때는 笠을 着用하고 앞 차양을 내려 얼굴을 부채로

가린다면 簷帽나 羅兀을 느려 얼굴 보이지 않게 함으로서 內外의 表示를 삼았던 것이다.

笠帽에 對하여서는 高麗朝에도 있었음을 이미 밝혔거니와 李朝實錄에 보면 「太宗九年三月壬戌 司憲府上時務數條…… 我朝女服之尊者 襖裙與笠帽也 而主婦從婢上下皆用黑羅帽白綃裙 非唯價重財費而已 尊卑混而貴賤雜矣 願自今大小婦女從婢之服 不許襖裙 其笠帽則只用苧布不許羅綃 其帽襜長短不與主婦笠帽相等 則市價省而上下辨矣」라 하여 太宗 九年 三月에 司憲府에서 時務 몇條目を 올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女服에서 尊貴한 것은 襖와 裙에다 笠帽을 着用하는 것이라 있어 笠帽가 婦女子 外出時의 一般 冠帽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는 同時에 婢子의 笠帽에 對하여서는 다만 苧布로 만들어 쓰게 하였으며 帽子の 簷의 長短도 主婦의 笠帽와는 같지 않게 하여 高麗時代에는 貴婦女만이 着用하던 笠帽가 이때에 와서는 婢子까지도 使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內外를 하기 爲하여서는 笠帽의 차양을 느리고 부채로서 얼굴을 가렸으니 이는 同實錄에 「太宗十四年十一月 命婦女垂簾帽禁持扇子 先是婦女笠帽卷其前簷持扇子以障面 至是命垂之擁其面」라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며 이때까지는 앞차양을 올리고 부채로서 얼굴을 가리던 것을 이後부터는 차양을 느려서 얼굴을 가리게 하였다.

그後 中宗朝에 들어서서 蓋頭라는 것이 생겨 婦女 出人의 冠帽가 되었는바 蓋頭는 俗名 羅兀로서 文獻備考·名臣錄·見捷

錄·林下筆記·晝永編等に 「奇中樞度始作蓋頭 古者婦女出人無蓋頭 公創新制以進 至今用之俗所謂羅兀」이라 있어 이것이 奇度으로 말미암아 새로 遵用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반드시 奇度의 創作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諷聞瑣錄에 보면 「東方士族女出外皆以皂羅蒙首 圓笠四垂尺餘而戴之 所以擁蔽其面 蓋唐幕羅帷帽之遺制 或謂之蓋頭」라 하여 우리나라 婦女子 外出時는 모두 둥근 것에 尺餘나 되는 皂羅를 느려 이를 쓰고 얼굴을 가리었는데 이는 蓋頭라 하며 唐나라 때의 幕羅帷帽의 遺制라 하였고 또한 五洲衍文長箋散稿中 帷帽辨證說에도 이를 指摘하여 奇度의 創作이 아님을 論했을뿐 더러 한걸음 더 나아가서 海東釋史에는 「按此本國羅兀之制 今宮人戴之 徐兢圖經高麗婦人皂羅蒙首餘被馬上復加笠焉 即唐宮人黑幕羅之遺法 蓋亦此制也」라 하여 前述한바 高麗婦女子의 蒙首 笠帽에서 내려온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以上은 主로 婦女子의 外出用의 冠帽에 關한 것을 論해 보았거니와 다음은 一種의 禮式用이라 할 冠帽에 對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靑莊館全書 女服從華制論에 보면 「太宗朝 王妃冠服 自大明而來 宮中不知被荷之術 明昇母彭氏指教乃得知之」라 하여 明나라에서 太宗朝에 王妃冠服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서 「世祖之年 明使尹鳳濟齎詔命冕服來 上遣宦官田昫問鳳曰 中宮受賜冠 狹小又有簪 如何穿著 鳳曰梳髮後從頂後分齒左右髮 交相結上 作丫髻 將冠帽其上 而以插簪……」이라 하여 世祖朝에

王妃에게 보내온 冠의 說明으로 보아 이狹小하고 비너가 있는 冠은 우리나라에서 일컫는 所謂 花冠의 一種이 가닌가 한다.

이 花冠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簇頭里라는 것이 있었으니 文獻備考에 보면 「趙克善曰……自光海中年來 率用玄錦爲表以絮爲裏 以空其中 貼戴頭上 而謂之足頭里 一時好尙 遂變國俗……」 이라고 있어 簇頭里는 光海中年 부터 있었던 것으로 玄錦으로서 겉을 하고 솜으로 안을 하여 그 안은 비었고 머리 위에 貼戴하였다.

이 簇頭里가 國巾이 되다시피 하게 된 것은 李朝中葉에 들어 트레머리의 奢侈가 날로 甚해지자 나라에서 이를 禁하고 代身 簇頭里를 使用하게 한데서 부터 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婦女子는 編髮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그대로 목 뒤에 느린것이 그 習俗이 었으나 李朝時代에 들어서서는 머리를 위에 었는 것이 流行하여 첩지 或은 트레머리에 큰 돈을 消費하였기 때문에 이에 對한 是非가 紛紛하였고 婦人의 무슨 때마다 이 트레머리에 對한 奢侈가 날로 甚하여 지자 李朝實錄에 보면 英祖朝에 이르러 三十二年 正月에 이 트레머리 하는 것을 禁하고 簇頭里를 代用하도록하였으며 或은 쪽을 트는것으로 代用케 하여 널리 普及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簇頭里는 蒙古制度에서 나온 것이라는 記錄이 있으니 이는 秋官志에도 보이거나 五洲文衍長箋散稿中 東國婦女首飾辨證說에 보면 「高麗史 元賜王妃古古里 即冠名傳於世則今簇頭里先乃古古里之音近而訛者所 又有花冠雲冠七寶之製」라고 있어 元나라에서 王妃에게 古古里를 賜하니

即 冠名으로 世上에 傳하는 지금의 簇頭里는 古古里의 音에 가까워 訛言인가 하였으며 이는 高麗中葉以後 末葉에 걸쳐 蒙古族인 元나라와의 婚姻이 많았던 關係로 元나라 때의 宮中制度가 高麗宮中으로 들어와 이것이 李朝의 宮中樣式이 또한 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同記錄에는 簇頭里外에 花冠 雲冠 七寶之制 등이 있음을 들었는데 花冠에 對하여서는 먼저 잠간 論하였거니와 雲冠 七寶 등이 모다 類似한 모습을 가졌음은 다음 圖說에 보아 알줄 안다

이 外에도 男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婦女子에 있어서도 防寒用으로 耳掩이 있었으니 그 모습等 이것에 對하여서는 圖說에서 說明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 × ×

끝으로 이 글을 끝마침에 있어서 李朝 末葉以後 西洋文明이 들어오매 따라 그 影響을 크게 받아 우리의 衣生活에도 많은 變化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새로 登場하게 된 冠帽에 對하여서도 論함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現在 쉽사리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이들 省略하기로 하였음을 덧붙여 둔다.

※參考書籍

後漢書, 三國志, 晉書, 南齊書, 梁書, 魏書, 周書, 隋書, 南史, 北史, 新唐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李朝實錄,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大典注解,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秋官志, 文

獻備考, 芝峰類說, 靑壯館全書, 然黎室記述別集 見睫錄, 諛聞瑣錄, 星湖僿說, 類選, 林下筆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昭代秘言, 疋言覺非, 名臣錄, 晝永編, 樊大巖集, 滬溪集, 女俗考, 高麗以前風俗關係資料撮要,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等.

◇附 錄◇

圖 說

(紙面關係로 掲載는 다음機會로 밑음)

折風巾, 介幘, 蘇骨, 弁, 金冠, 幘頭,

冕旒冠, 翼蟬冠, 遠遊冠, 通天冠, 梁冠, 臥龍冠, 遺子禮冠, 芙蓉冠, 東波冠, 程子冠, 冲正冠, 章甫冠, 進賢冠, 四方冠, 連葉冠, 海豸冠, 隻卞, 紗帽, 儒巾, 幅巾, 平頂巾, 宕巾, 屈巾, 戰巾, 笠, 白笠, 玉鶯笠, 草笠, 戰笠, 滿縵頭里, 朱笠, 雉羽笠, 平笠, 方笠, 甲冑, 氈帽, 蛤笠, 平涼子, 멩거지, 말뚝멩거지, 갈매기, 삿갓, 僧冠, 고깔, 松蘿, 들갓, 대삿갓, 갓모, 접사리, 網巾, 風遮, 揮項, 耳掩, 簇頭里女笠, 남바위, 造帛耳, 천의 羅兀, 長衣.

간장 선택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900cc (五合) 瓶入

全國各食品店에서 定價로 販賣하고 있습니다>



9/ (5升) 以上 시내配達

電話: ㉠ 3211 · 3212 · 4208

佛光洞直賣所 電話 ㉠ 5258